

제144회 임시회

- 2003년도 제1회 환경국소관 추가경정예산(안) 예비심사 -

검 토 보 고 서

2003. 8. 29

환경수자원위원회
전문위원원

2003년도 제1회 환경국소관 추가경정예산(안) 예비심사

검 토 보 고 서

I. 회 부 안 건

- 의안번호 : 296
- 안 건 :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

II. 경 과

1. 제 출

- 제출일자 : 2003년 8월 14일
-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2. 회 부

- 회부일자 : 2003년 8월 18일
- 근 거 : 의사 13130 - 834

3. 상 정

- 상정일자 : 2003년 8월 29일
- 위원회 회의 : 제144회 임시회 제1차 회의

III. 예산안규모 및 주요내역

1. 총괄내용은

- 환경국의 일반회계 추경세출예산(안)은 기정예산 2,879억 5천 7백만원 보다 299억 8천 9백만원(증 10.4%)이 증액된 3,179억 4천 6백만원이고,
-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세출예산(안)은 기정예산 515억 5천 1백만원보다 35억원(증 6.8%)이 증액된 550억 5천 1백만원으로 각각 편성제출되었음.

< 2003 추경예산(안) 규모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추경예산(안)	기정예산	증 · 감	증감율
일반회계	317,946	287,957	29,989	10.4%
도시개발 특별회계	55,051	51,551	3,500	6.8%

2. 추경세출예산(안)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

1) 일반회계

- 신규사업은 자동차공회전 단속업무추진 2억 8천 3백만원, 대학교담장 개방 녹화사업 1억 1천 9백만원, 길동자연공원조성 1억 7천 7백만원, 홍제동공무원아파트 공원조성 16억 5천만원, 서울숲조성 23억 6천 6백만원, 산림내절개지 정비사업 10억 4천 4백만원 등 6개 사업에 56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,
- 증액사업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건설 200억, 용두그린공원조성 20억, 걷고싶은녹화거리조성 4억 6천만원,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1억 7천 4백만원, 하천변녹화사업 3천 5백만원, 시관리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3천 1백만원,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16억 5천만원 등 7개 사업에 243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.

2) 도시개발특별회계

- 증액사업으로 길동도시자연공원 등 2개 공원조성을 위한 미집행 공원 용지보상비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.

IV. 추경예산(안)의 사항별 내역

1. 일반회계

- 자동차공회전단속 업무추진을 위해 2억 8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04. 1. 1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공회전 위반단속을 위해 공회전 제한 장소에 안내표지판을 미리 설치함으로써 시민이 동 제도의 조속한 인식과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 200억원 증액편성에 대하여는 2003년도 추진공정목표 60% 달성하고, 2004년도 준공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반영한 것임.
- 생활주변공원녹지 확충의 일환으로
 - 용두근린공원조성 20억원 증액편성은 청계천복원과 연계하여 조기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03년도 추가보상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,
 - 대학교담장개방 녹화사업은 폐쇄된 대학교의 담장을 개방하여 수목 식재와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삽막한 도시공간을 개선하고 생활권지역내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반영한 것임.
 - 길동자연공원 조성은 생태공원지구와 연계하여 기조성중인 생태문화 센터 건립의 기본계획변경(지하층 추가 $625m^2 \rightarrow 992m^2$)에 따라 추가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며,
 - 홍제동 공무원아파트공원조성은 안산 도시자연공원에 있는 노후아파트를 철거후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물보상후 추진하여야 하므로 2003년도는 우선 건물보상비만 반영한 것으로 인근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.

- 서울숲 조성은 서울시정 4개년계획의 중점 주요시책사업으로 생활권 녹지가 부족한 서울 동북부지역에 거점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. 2005년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금년도 공정인 교통광장 정비공사 등 1단계 사업착수를 위해 23억 6천 6백만원을 반영한 것임.
- 산림내 절개지 정비사업에 10억 4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암사면 정비, 배수로정비 등 재해예방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재해대책 기금에서 사용토록 되었으나 기금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정비의 시급성을 감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에 4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지상에 설치된 전주를 지중화함으로써 한전지중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중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서울시가 공사비의 $\frac{1}{3}$ 을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됨.
-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와 하천벽녹화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서울구간의 경관 향상 및 탄천 수변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음.
- 시 관리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에 3천 1백만원을 증액 하였는데 시 관리 공원, 녹지분야에 근무하는 상용인부의 사기진작을 위한 동절기 피복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임.
-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에 16억 5천만원을 증액 하였는데 방이동 생태계보전지역내 영농 등으로 훼손우려가 높은 토지의 우선 매입과 둔촌동생태계 보전지역의 종합관리계획(2003. 8월중수립)에 따라 안내 표지판, 관찰테크 조성을 위한 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임.

2. 도시개발특별회계

- 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을 위해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길동도시 자연공원과 명일근린공원내 시설정비를 위한 우선보상 토지매입비를 반영한 것으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V. 검 토 의 견

- 2003년도 제1회 환경국소관 추가경정예산(안)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.
-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 - 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,879억5천7백만원 대비 10.4%인 299억8천9백만원이 증액된 3,179억4천6백만원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(안)은 기정예산 515억5천1백만원 대비 6.8%인 35억원이 증액된 550억 5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.
 - 이중 신규사업은 자동차공회전 단속업무추진 2억 8천 3백만원, 대학교 담장 개방 녹화사업 1억 1천 9백만원, 길동자연공원조성 1억 7천 7백만원, 홍제동공무원아파트 공원조성 16억 5천만원, 서울숲조성 23억6천6백만원, 산림내절개지 정비사업 10억 4천 4백만원 등 6개 사업에 56억3천9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,
 - 증액사업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건설 200억원, 용두그린공원조성 20억원, 걷고싶은녹화거리조성 4억 6천만원,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1억 7천 4백만원, 하천변녹화사업 3천 5백만원, 시관리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3천 1백만원,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16억 5천만원 등 7개 사업에 243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.
 - 또한 도시개발특별회계중 길동도시자연공원 등 2개 공원조성을 위한 미집행공원 용지보상비 35억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.

□ 다음은 주요사안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비 2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. 마포자원회수시설 공사는 마포구 상암동 481-6번지에 설치되는 1일 처리능력 750톤으로써 마포구와 중구, 용산구 등 3개구의 자원을 회수하여 처리코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약 5년에 걸친 공사입니다.

총 공사비는 1,701억9천6백만원으로 현 공정율은 36%이며 2003년 말까지 60%의 공정을 달성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. 2003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440억원이며 계획대로 60%의 공정율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2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입니다.

따라서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추경안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년도별 공정율이 정해져 있고 일괄공사 계약에 따라 년도별 지급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며,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공정율이 저하하거나 건설사가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의문시됩니다.

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한 계속비제도는 당해연도 예산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완공에 여러해가 소요되는 도로건설, 지하철건설 자원회수시설건설 등에 대한 소요 예산을 그 총액, 기간, 연부액 등을 적산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므로써 예산집행에 있어서 계속성 및 투명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한 계획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이와 같은 계속비제도가 있음에도 편의적이고 관행적으로 당해연도 예산만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 사료되며,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.

- 다음은 홍제동공무원아파트 공원조성비 16억5천만원, 서울숲조성비 23억 6천6백만원, 산림내설개지 정비사업비 등 6개 사업에 56억3천9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.

이와 같은 신규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는 아주 제한적으로 정말 의회에서 의결하여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절박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하나

연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추경예산안은 추경예산안만큼 본 예산 편성시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며, 추경을 전제로한 본예산 편성은 바람직한 예산편성과 운용이라 말 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.

□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환경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